

龜尾市 住宅事業所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(案) 檢討 報告書

□ 주택사업소의 設立 趣旨

도시 無住宅 零細庶民과 勤勞者의 住居安定을 위한 시영주택의 건설 및 설비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圖護하기 위함.

□ 設立 根據

- 1991 . 5 . 10 내무부로부터 道內 浦項市 및 龜尾市에 주택사업소 설치승인
- 1991 . 5 . 14 市政調整委員會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에 제출
- 1991 . 5 . 24 조례안 의회 의결 (원안 의결)
- 1991 . 6 . 14 조례 공포 (第 949 號)

□ 주택사업소의 주요 업무

- 市營住宅 설비공사의 설계 시공 및 지도감독
- 분양금 , 임대료 ,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부과징수등 특별회계 관리
- 기타 시영주택의 事後管理등 시영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諸般事項 추진

□ 住宅事業所의 事業推進 現況

○ 推進 實績

- 형곡지구

사업비12,598백만원을 투입하여 360世帯의 아파트를 건립분양('92.11.24까지 入住)

- 인의지구

사업비11,260백만원을 투입하여 370世帯의 아파트를 건립분양('92.11.24까지 入住)

○ 推進 計劃

- 도량지구

사업비 34,560백만원을 투입하여 960世帶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임
(사업기간 : '92.11. ~ '94.12)

- 송정지구

사업비 19,200백만원을 투입하여 300世帶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임
(사업기간 : '93.9 ~ '95. 11)

- 옥계지구

사업비11,322백만원을 투입하여 320世帶의 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계획임
(사업기간 : 未定)

□ 改正 內容

- 1992年 12 月 5日 내무부 및 도로 부터 浦項市 및 龜尾市의 住宅事業所 機構 및 定員에 대한 時限延長을 承認받은 것으로서
- 주택사업소 설치 조례 附則 第 2 項 " 이 條例는 1992 年 12 月 31日로 이를 廢止한다 " 를 " 이 條例는 1995 年 12 月 31 日로 이를 廢止한다 " 로 改正

□ 改正 事由 및 檢討 意見

既 建立 분양한 시영아파트의 효율적인 事後管理로 入住者의 불편을 解消함과 아울러 계획 실시중인 殘興事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서민의 주택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住宅事業所의 存置期限을 延長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됨.